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726번
- 제 안 자 : 김용석 의원 외 9명
- 제 안 일 : 2020년 8월 11일
- 회 부 일 : 2020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이 없다’는 문제, 비대면 활동의 필요성 확대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 활동을 가능 및 편리하게 하는 원스톱서비스 방식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온라인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추진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0.8.19. ~ 8.26.)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2 신설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청소년 이용률 저조의 문제, 감염병 등으로 인한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필요성 증대로 온라인에서 청소년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네트워크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8조의2(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래혁신기술(「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 기술을 말한다)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 안 제8조의2제1항은 청소년 온라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혁신기술을 활용한 지원 체계 마련(안 제1호), 청소년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안 제2호), 청소년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안 제3호)을 규정하고,
 - 안 제2항은 효율적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안 제3항은 구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코로나19)으로 인해 학교의 온라인 개학, 청소년센터 및 기타 청소년 시설의 사업이 제약되고, 일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온라인상 활동 공간을 마련하려는 본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과 청소년시설 이용 확대, 청소년활동 지원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 청소년 대상 사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공간적 한계를 일부 극복하여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활동의 온라인화’는 청소년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청소년 보호, 복지, 육성 등의 사업과도 연계하여 종합적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국의 검토의견 : 수용

담당부서인 평생교육국은 본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통해 수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 다만, 본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준용조항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시설의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안 제8조의2제1호는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 준용한 혁신기술의 정의는 서울시가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술을 정의한 것이며,

〈 본 개정안 제8조의2 제1호의 내용 〉

1. 미래혁신기술(「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 기술을 말한다)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미래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

마.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에서 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본 개정안의 목적은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융·복합하자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보다 근접하게 표현한 법령의 정의(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준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 안 제8조의2제1항제2호는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타 지자체, 민간단체, 시립시설 등은 온라인 캠페인(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 교류(SNS를 통한 소통, 시대읽기 등), 온라인 강의(헬스PT, 만들기, 민주시민 교육 등)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비대면 가능한 프로그램 중 온라인 전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우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시립시설의 경우 7월 현재 535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청소년 정책에 맞춰, 청소년의 흥미, 활동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고, 청소년시설이 온라인으로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시설 비대면(언택트) 프로그램 운영현황 〉

구분	총계	성격		전달방식		운영주체		개설일		참여인원 (명)
		정규	특강	쌍방향	일방향	강사	청소년	3월* 이전	3월 이후	
청소년시설	535	390	145	352	183	299	236	58	477	193,499

※ 3월 : 청소년시설 휴관에(2020.2.24.~7.19.)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시행

※ 시립청소년시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비대면(언택트) 우수 프로그램

- ▶ 하자 ON(청소년직업체험센터) : 디지털 대면 직업체험 프로젝트(실시간 상호작용형 수업)
- ▶ 수영·헬스 홈트레이닝(문래청소년센터) : 헬스PT, 수영 영법 등 실시간 화상 코칭
- ▶ 해봄창업공작소(광진청소년센터) : 창업을 위한 진로체험 및 활동(zoom활용 쌍방향)
- ▶ 집밥콕선생(목동청소년센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밥 레시피 공유챌린지

※ 2021년 디지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언택트 체험 및 우수한 학습 콘텐츠 제공 예정

- 웹, 모바일 등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학습 콘텐츠 제공 플랫폼 구축 (미디어센터, 2021년 사업예산 919백만원 편성 예정)

- 다만, 청소년시설의 ‘허위 청소년 이용률 보고(홈페이지 방문자, 홍보메일 수신자, 자판기이용자, 사물함이용자, 매점이용자 등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이용자와 각각 누적 산정)’와 평생교육국의 지도·감독 소홀 등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어, 온라인 청소년활동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시설 평가기준인 청소년 이용률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시설의 일부 수탁법인은 청소년활동의 다양성, 포괄성 등을 이용하여, 사설학원(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논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처럼 운영하거나, 수익성이 양호한 성인·유아 프로그램(유아스포츠단, 태교요가, 웰빙출산교실, 캠프모임, 헬스PT 등) 등에 집중하고 있는바, 수탁법인이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새로운 청소년활동 방향’이 아닌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 등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수탁법인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실제 시립청소년센터에서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수정예Prime교과수학, 중학논술, 경진대회 대비 영재과학올림피아드, 중등영어, 중등수학, 초등영어, 초등수학, 교과대비 한국사, EBS과닉스-심화, 종합영어 등

- 안 제8조의2제1항제3호는 청소년활동 시설 및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과 함께 주말에만 시행되던 네트워크 사업(놀토(‘놀라운 토요일’) 프로그램 등)이 주중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본 개정안 제8조의2 제3호의 내용 〉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 다만, 본 조례 및 본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으나,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청소년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보호 등의 사업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바, 청소년 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네트워크의 확장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8조의2제1항제4호는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 서울시가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본 개정안에서 추진하는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 평생교육국은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의2 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온라인 이용지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각 시설별 공통 프로그램의 통일성 유지, 특화 프로그램의 공간적 제약의 부분적 해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청소년정책의 변화를 개별 청소년시설에 적기에 적용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 및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안 제8조의2 제2항의 내용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다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 안내를 위해 2005년부터 청소년 활동 정보 종합안내포털인 ‘e-청소년(<https://www.youth.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전반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단순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정부의 시스템과 중복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비대면 또는 온라인 프로그램 특화 및 제공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국가 사업과 차별 및 특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본 개정안은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며, 청소년 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시립청소년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